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34호

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**「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**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7월 17일

임실군의회의장 이장인

1. 개정이유

- 임실군의회 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, 회의록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회의 방청 제한 사유 및 그 근거를 회의 규칙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, 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항 수정(안 제48조제1항)

- 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조문 신설(안 제48조의2, 안 제80조)

-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,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
-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다. 명칭 변경(안 제49조, 안 제59조제3항)

- 간사 -> 부위원장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7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
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
3) 전자우편:charity81@korea.kr

4. 개정안: 붙임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전단 중 “개의시를”을 “개의시각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개의시로”를 “개의시각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단서 중 “토론 또는”을 “토론 또는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본문 중 “의원”을 “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장제6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임시회의록의 공개) 교정 완료 전의 임시회의록은 회의록의 배부·공개 전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제49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심사경과 및 결과”를 “심사경과 및 결과”로 한다.

제59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68조 중 “발언하려 고”를 “발언하려고”로 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파견을 즉시”를 “파견을 즉시”로 한다.

제82조부터 제89조까지를 각각 제83조부터 제90조까지로 하고, 제81조를 제82조로 하며, 제80조를 제81조로 한다.

제81조의2를 제82조의2로 한다.

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0조(방청 제한 고지)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답변하여야 한다.

제82조 앞의 “제9장 징 계”를 삭제한다.

제8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장 징 계

제84조(종전의 제83조) 제2항 본문 중 “규정 에”를 “규정에”로 한다.

제90조(종전의 제89조) 중 “위원회는”을 “윤리특별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개의)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.	제13조(개의) ---------- ---------- 개의시각을 ----. ---------- --.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 략)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개의시각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안건심의)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하되,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	제25조(안건심의) ①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토론 또는 ---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	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----- 회기 종료 후 30일

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	이내에 의원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8조의2(임시회의록의 공개) 교정 완료 전의 임시회의록은 회의록의 배부·공개 전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제49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	제49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---------- ------ 부위원장과 -------- --.
제57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	제57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---------- --- 심사경과 및 결과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생 략)	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·날인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부위원장이 --------.
제68조(군수 등의 발언) 군수 또	제68조(군수 등의 발언) -------

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 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	---------- ---- 발언하려고 ---------- ----------.
제73조(경호)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,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.	제73조(경호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파견을 즉시 ---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80조(방청 제한 고지)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답변하여야 한다.
제80조 ~ 제81조의2 (생 략)	제81조 ~ 제82조의2 (현행 제80조부터 제81조의2까지와 같음)
제9장 징 계	<삭 제>
<신 설>	제9장 징 계
제82조 (생 략)	제83조 (현행 제82조와 같음)
제83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(생 략)	제84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	② ----------

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차기의회의 집회일 3일 이내에 해야 한다.	---------- ----- 규정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84조 ~ 제88조 (생 략)	제85조 ~ 제89조 (현행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와 같음)
제89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	제90조(의견수렴) 윤리특별위원회는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

관련법령

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69조(위원회에서의 방청 등)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7조(방청인의 단속)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·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

제56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.
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